

종 합 토 론

박중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일 (신라대 법학전공 교수)

저는 형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를 보고 헌법학자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경험과학자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와 같은 규범학자들과 경험과학자들이 잘 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협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는 모 개그맨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해당 사건이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사건 중 강간혐의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 공소 기각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형법학자로서 관심을 갖고 사건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당시 언론보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재판 종결 후 개그맨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법학자들만 알아야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윤리강령은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신문사와 신문협회 등에서 자율적인 보도지침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공인에 관한 부분은 ‘공인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기준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언론이 스스로 세부적인 보도기준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는 것이 원래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고, 언론보도

의 영역이 계속해서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언론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보도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공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김봉수 (전 부산MBC 보도국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저는 토론회 제목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가 뉴스를 정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먼저 이것이 중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성과 관련된 범죄는 흥미로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은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계층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인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공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사적인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인의 사생활침해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성범죄보도를 알권리와 연결 지어 말씀하셨는데 공인의 성범죄보도는 알권리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감독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뜰이나 언론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제재를 가한다면 언론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흥미위주로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로 인해 언론 전체가 공인의 성범죄보도를 사생활침해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언론이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고소, 고발사건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만 보도대상이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

다. 발제문에 나온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언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의 기본지침을 어긴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측면에서 공인에 대한 성범죄보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장)

사람들은 흔히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로 성공의 척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명예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인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행위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인의 범죄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평범한 사람이니까 해도 되겠구나’ 라는 도덕적 해이, 수치심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의 범죄보도는 유사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에서조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다뤄 높은 시청률을 얻기도 하고, 범죄사건을 재연드라마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공인과 관련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부경대 법학부 교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혐의가 바로 유죄인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추론을 할 때는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최근 종편 등 일부 방송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어떤 연예인이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한 후, 사실이라면 어떻다, 사실이라면 과거에 그 사람이 한 발언은 사건과 이런 연관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패널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면 그것이 곧바로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패널 중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적절한 선을 지키며 말하고는 있지만 혐의사실 자체가 바로 유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고려한다면 혐의사실이 바로 유죄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보도하는 태도에 대한 제재를 생각해 보아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박중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혐의보도라는 점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 후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자의 입장을 떠나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혐의 보도는 먼저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고소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고 사건화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 성폭행인지 아닌지 경계에 있는 고소사건들이 수사나 재판결과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비일비

제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고소사건들은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심지어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하는 피해자의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고소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판단되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정토론 중 고소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강력한가에 따라 보도 가치와 보도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 이외의 증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또는 무혐의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한 보도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보도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사후에 언론이 책임을 져야할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법원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정해왔던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배상액을 높이기로 법원이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의 사후적 책임이 종전보다는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도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인의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대상자의 사생활보호라는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